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